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867
- 발 의 자 : 우창운 의원 (찬성자 : 14명)
- 발 의 일 : 2015년 11월 9일
- 회 부 일 : 2015년 11월 11일

2. 제안이유

-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2013년 이후 전자정보에 대한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그리고 정보격차 해소 정책에 관한 법률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였음. 이러한 동법 개정의 중요한 취지 중의 하나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는 것임.
- 하지만 현행 서울특별시 국가정보화기본조례는 동법이 이와 같은 이유로 2013년 이후 세 차례 이상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취지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웹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와 웹접근성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동 조례의 제정을 제안함.

3. 주요내용

- 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4조제1항).
- 나. 서울시장은 매년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웹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다. 서울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검토의견

가. 목 적(안 제1조)

- 본 제정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임.
- 웹접근성과 관련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제1항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인터넷 웹사이트 이용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은 전자정보와 비전자 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¹⁾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과 법인의 웹 사이트는 접근성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되어 있음.
- 현재 서울시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의 정보약자들이 비장애인, 젊은이와 동등하게 웹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구축·개선 과정에 홈페이지 서비스의 웹접근성을 개선하고 있으나, 동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시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에 실질적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용어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제3호에서 “웹접근성”의 용어 정의는 부산광역시 조례(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와 같이(“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정의하고 있음.²⁾
- 다만, 웹접근성의 정의와 관련하여 상위법령 등에서 웹접근성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는 않으나, 행정자치부 등의 문건에서는 웹접근성을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안 제1조의 목적과 입법취지에 맞게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다. 웹접근성위원회 설치(안 제8조)

- 안 제8조는 제1항에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웹접근성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가 “서울특별시 웹접근성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2)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제2조제9호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을 말한다.
2. “정보격차”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3. “웹접근성”이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7조(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 ① 시장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1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의거 심의회 등의 자문기관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⁴⁾,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정보화전략위원회”가 “웹접근성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조례간 일관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중 정보화전략위원회의 기능에 본 조례안의 ‘웹접근성위원회’ 기능을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정보화전략위원회와 웹접근성위원회의 기능 비교〉

정보화전략위원회 기능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8조)	웹접근성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계획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8조제1항)
1.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중요한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4. 그 밖의 정보화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웹접근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④ 위원은 학계·언론계·기업계·민간단체·시의원·공무원 중에서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기획담당관이 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안 제9조는 서울시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시장,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및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시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은 웹접근성에 대한 전문성 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웹접근성 실태조사(안 제5조), 웹접근성 향상 추진사업(안 제6조), 웹접근성 관련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웹접근성 사업의 민간위탁(안 제10조) 등의 추진시 웹접근성 관련 전문기관이 특정 이해관계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제기될 수 있는 바,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강행규정의 임의규정화에 대한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웹접근성 협력체계 구축 관련 수정의견〉

제 정 안	수정의견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및 웹접근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u>구축하여야 한다</u>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및 웹접근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u>구축할 수 있다</u> .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현재